공고 제2019-298

등록번호	신당제5동-6510
등록일자	2019.8.5.
결재일자	2019.8.5.
공개구분	비공개(5)

주무관	시민생활팀장	신당제5동장	
차홍주	정복남	08/05 김영혜	
협 조			

2018년 4분기
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

서울의 중심 중구

신 당 제 5 동

2019년 3분기
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

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

Ⅰ 추 진 근 거

☐ **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시행령 27조 제1항**

○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·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.

☐ **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(동정부과-13672, '19.8.2.)**

Ⅱ 추 진 개 요

☐ **주민등록제도 취지 확립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등록사항과 현 거주사실과 일치하도록 정리**

☐ **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/4까지 경감조치**

※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기간 : 2019. 8. 2. ~ 9. 27. (54일간)

이 문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의 승인없이 수정 할 수 없습니다.

Ⅲ 추 진 계 획

☐ **사실조사기간 : 2019.8.5.(월) ~ 2019.9.27.(금) (54일간)**

☐ **중점 조사대상**

: 거주불명자, 사망의심자, 100세 이상 고령자, 허위전입신고자,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

☐ **조치사항**

: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[2019. 9. 20.(금) ~ 2019. 9. 27.(금), 8일간]

Ⅳ 세 부 추 진 계 획

☐ **사실조사 홍보 : 기간내 계속**

○ **홍보방법** :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활용

○ **홍보내용**

-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 전출자, 사망의심자,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실조사에 대한 주민협조 당부
- 무단 전출자에 대해 실제 거주지로 자진 신고하도록 홍보
- 방문확인시 실거주 미전입자는 전입신고하도록 안내

☐ **사실조사 및 최고·공고 [2019.8.5.(월) ~ 2019.9.19.(목), 46일간]**

○ **조사자 : 동주민센터 공무원**

- 통장 합동으로 조사, 세대 방문시 **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제시하여 민원발생 예방**

《 사실조사 대상 》

- 전체 거주불명자('19.7.31. 18:00 기준)
-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
- 100세 이상 고령자(1919.6.30. 이전 출생자)
-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
-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

- 100세 이상 고령자는 **노인복지담당과 협조하여 기초연금 등 수령 여부 사전 확인 후** 사실조사 실시
- 장기결석 및 학력기 미취학아동 등 사실조사 실시 후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

○ **최고·공고 및 주소이전 안내**

- **최고장 발송**(7일 이상) : **등기우편** 발송
- **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**(7일 이상)

☐ **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[2019.9.20.(금)~2019.9.27.(금), 8일간]**

○ **기간 내 미신고자는 사실조사 등에 의거 주민등록표 정리**

○ **허위신고자,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고발 등 조치**

○ 직권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**14일 이내 통지**하고, **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14일 이상**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

☐ **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[2019.8.5.(월)~2019.9.27.(금), 54일간]**

Ⅴ 행 정 사 항

☐ **동장 및 담당을 정·부 책임자로 지정하여 사실조사**

☐ **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제출 : '19. 10. 4.(금)까지**

- **사실조사 결과보고 및 주민등록 이용실태 점검표 제출**

붙임 1.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(서식) 1부.
2. 주민등록시스템 이용실태 점검결과(서식) 1부.
3. 주민등록 관련 법령 별첨. 끝.

이 문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의 승인없이 수정 할 수 없습니다.

참고1 관련 법령

<주민등록법>

제40조(과태료)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·제3항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,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주민등록법 시행규칙>

제21조(과태료) ③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고(신청) 지연사유서를 받아야 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
2.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·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
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5. 미성년자
6.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<질서위반행위규제법>

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.

<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>

제2조의2(과태료 감경)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. **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**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
2.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·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
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5. 미성년자

제5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.

이 문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의 승인없이 수정 할 수 없습니다.